

장애무용 정책 방향과 과제[†]

홍혜전* 국립공주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장애무용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무용가, 장애예술기획자, 장애예술지원기관 담당자, 장애인 정책 및 문화예술정책 연구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무용은 단순한 예술활동을 넘어 장애인이 자신의 몸과 예술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실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무용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며 평등한 예술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무용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지원 확대, 둘째, 장애무용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셋째,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넷째, 장애무용을 독립된 예술 장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 다섯째, 장애와 예술을 아우르는 전문인력 양성과 감수성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무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동등하게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장애무용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확장하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나아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장애무용, 창작지원, 문화예술 접근성, 장애예술정책, 지속가능한 발전

I. 서론

장애무용은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를 예술적 매체로 전환하며 사회적 소외와 억압에 저항하는 실천적 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예술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자아 인식, 표현의 자유,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중요한 문화적 활동이며, 사회 통합의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무용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무용은 공연예술 분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과 지원 수준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으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학의 관점에 따르면, 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억압에 의해 형성된 차별의 산물이다(Oliver, 1990).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예술은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의 미학을 전복하고, 감각적 다양성과 신체 표현의 재해석을 통해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비판적 실천이 된다. 장애무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무용미학과 공연 양식을 넘어서는 미학적 실험이며, 예술의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실천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무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재하다.

기존 연구들은 장애예술 일반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 왔다. 첫째, 장애예술 창작지원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정희 외(2018)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는 헌법상 문화권의 일환이며,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안정적으로 보장

[†] 이 논문은 한국무용과학회 제49회 추계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완한 것임.

* 국립공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hyejeon007@kongju.ac.kr

하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박신의(2023)는 현행 정책이 대부분 단기적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지속 가능한 생애 경로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둘째, 장애예술을 통한 직업적 자립과 경제활동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정종은과 최보연(2021)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 및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용문(2023)은 해외 사례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국내에도 이러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현아(2024)는 특히 장애무용과 같은 공연예술 영역에서의 자립 기반이 취약하며, 예술활동과 생계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셋째, 장애예술 교육과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정병은(2016)은 장애유형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창작의 다양성과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지설(2024)은 장애예술 교육의 정책적 변화 과정에서 장애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장애예술 정책의 방향성과 체계적 접근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안채린(2020)은 장애예술 지원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창작 생태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채민(2023)은 국제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창작 단계부터 유통과 공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가 장애예술 발전의 핵심임을 밝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장애예술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장애무용에 특화된 정책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무용은 감각적 상호작용, 비정형적 신체 표현, 비장애 중심 미학에 대한 저항 등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별도의 분석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바탕으로, 장애무용의 정책적 보호 및 육성의 필요성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무용의 실천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구조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무용의 특수성과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 연구는 실천가 및 전문가들과의 심층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무용의 정책적 기반을 정립하고, 창작-교육-유통 등 장애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장애예술인의 자립과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학술적·사회적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 장애예술 정책연구의 성과를 단순히 반복·요약하기보다는, 장애무용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해외 사례와 이론적 논의를 주요 분석 준거로 삼고자 한다. 이는 국내 장애예술 정책연구가 주로 제도 현황 분석이나 사업 구조 검토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장애무용과 같이 창작 과정의 지속성, 신체적 상호작용, 관계적 노동이 핵심이 되는 장르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지녀 왔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장애예술 정책 및 실천 사례들은 접근성을 창작의 결과가 아닌 과정의 원리로 설정하고, 교육-창작-유통-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축적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장애무용을 복지적 지원의 대상이 아닌 예술적 실천이자 문화적 생산으로 재위치시키는 정책 설계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장애무용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무용이 지닌 예술적 실천으로서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둘째, 장애무용 창작 및 공연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창작지원과 유통 활성화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장애무용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교육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넷째, 장애무용가가 직업적 예술가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적 장치와 제도적 지원체계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장애무용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기반과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장애무용의 과제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단심층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적용하였다. FGI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구성 시 집단 내 동질성과 집단 간 분할을 고려하는 것이 자료의 질과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조건으로 제시되어 왔다(Morgan, 1996).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집단의 포괄적 구성 방식이 아닌, 장애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문 영역을 기준으로 동질적인 소집단을 구성하고, 집단 간 관점 차이가 드러나도록 분할된 구조를 설계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장애무용의 예술적 실천과 이를 둘러싼 제도, 정책, 행정 환경을 다층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무용가 및 장애무용 단체 관계자, 장애무용수 보호자, 장애예술교육자, 장애예술기획자, 장애예술 관련 행정가 및 지원사업 기관 담당자, 그리고 장애인 정책, 장애예술 및 문화예술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장애무용의 현장 실천 경험과 정책적·행정적 의사결정 구조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총 20명의 연구참여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첫째, 장애무용 또는 장애예술과 관련된 직접적인 실천, 기획, 행정, 연구 경험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였다. 둘째, 동일 역할군 내에서는 유사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역할군 간에는 장애무용 실천 집단, 교육집단, 기획 및 행정 집단, 정책 및 연구 집단으로 분할하여, 동일 주제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비교, 대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 구성 전략은 FGI 연구에서 요구되는 심층적 논의 촉진과 해석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며(Morgan, 1997), 장애무용을 둘러싼 예술적·교육적·정책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 수와 집단 구성은 연구목적과 FGI 연구의 방법론적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FGI	구분	소속	활동분야
1		장애무용단 대표	지체장애/무용
2		장애무용단 대표	비장애/무용
3		프리랜서	청각장애/무용
4		장애무용단 대표	비장애/무용
5	장애무용 및 단체 대표	장애무용단 대표	비장애/무용
6		장애무용수 부모	비장애/무용
7		장애무용수 부모	비장애/무용
8		장애무용협회 회장	지체장애/무용
9		교수	지체장애/사회복지 및 연구
10		장애예술협회	비장애/문학

FGI	구분	소속	활동분야
11		교수	지체장애/장애학 및 사회복지
12		연구소	비장애/문화예술분야
13		장애온라인매체	비장애/장애학
14		기자	정신장애/장애학
15	연구, 기획·행정 및 문화예술교육	장애예술교육자	비장애/기획
16		문화예술교육자	비장애/무용
17		기관 대표	비장애/행정
18		기관 팀장	비장애/행정
19		극장 접근성프로듀서	비장애/접근성
20		장애예술기업 대표	비장애/미술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집단심층면담(FG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FGI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장애무용의 현황, 제도적 한계, 발전 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면담은 평균 60~90분 동안 진행되었고,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FGI 과정에서는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된 문제 인식뿐 아니라 역할과 위치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하였다(Krueger, 2014).

자료분석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Braun & Clarke, 2006). 분석의 준거 틀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계획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범주는 첫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둘째,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자립 기반 조성, 셋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넷째,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다섯째, 장애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해당 범주에 따라 반복적으로 검토·코딩되었으며, 각 범주별로 도출된 핵심 진술과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정책적 맥락과 현장 경험을 연결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해석 가능성과 실천적 함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Bowen, 2009).

3. 자료의 진실성 및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FGI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진실성 확보 전략을 적용하였다. 첫째, 자료 삼각검증(data triangulation)의 관점에서 FGI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선행연구 및 정책 문헌과 교차 검토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즉 FGI에서 도출된 주요 진술과 해석을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 및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대조하여 해석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였다(Bowen, 2009). 둘째, 연구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여 연구자가 해석한 내용이 참여자의 실제 경험과 인식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 이후, 주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결과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료 해석의 신빙성을 강화하였다(Lincoln & Guba,

1985). 셋째, 동료 연구자 검토(peer debriefing)를 통해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석의 편향 가능성을 점검하고 분석의 타당성을 보완하였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는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수행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FGI 진행 방식, 자료 활용 범위,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얻었다.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았다(Creswell & Poth, 2016). 또한 연구참여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또는 코드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FGI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한 후 연구 종료 후 폐기하였다. 이러한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FGI 분석 결과, 장애무용을 포함한 장애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 다섯 개의 정책과제 영역이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발화를 종합·분석한 결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창작지원 강화, 직업적 예술가로서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및 자립기반 조성,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이 핵심 과제로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상호 독립적인 영역이기보다는 장애예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유기적 요소로 작동하며, 창작-유통-교육-행정-정책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각 정책과제 영역과 그에 따른 세부 추진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결과

순번	정책과제 영역	세부 내용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1) 창작공간과 접근성 확보 2) 접근성 설계 원칙화와 통합적 교육 체계 구축 3) 창작 경험 확대 및 협업 지원 4) 창작물 유통 및 플랫폼 구축
2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1) 예술강사 및 창작활동 연계 지원 2) 일자리 파견 및 조력자 지원 시스템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1) 물리적 접근성 개선 및 공간 활용 2) 접근성 강화된 공연 유치 및 상시 운영 3) 통합형 공간 운영 및 협업 촉진
4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기반 조성	1)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정비 2) 예산 확보 및 전담 인력 배치 3) 법령 정비 및 공간 확보
5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전문인력 교육 지원	1) 예술교육자 및 매개자 양성 2) 감수성 교육 및 인식 개선 3) 전담인력 채용 및 지원 체계 구축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단편적 지원을 넘어, 창작공간 확보, 접근성 보장, 협업 구조, 유통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FGI 참여자들은 개별 시설 개선이나 단일 사업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실제 창작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장애무용인의 창작 조건이 공간, 이동, 관계, 생활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단순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전문 창작 주체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설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 창작공간과 접근성 확보

첫째, 장애유형별 접근성 요구를 반영한 공연장, 연습실, 창작공간 설계가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FGI 결과에 따르면 공연장은 단순한 발표 공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훈련과 리허설, 창작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계와 운영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동장애무용인의 경우 무대 접근 경사로, 분장실 및 대기 공간 동선, 리허설 이동 경로가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창작 이전 단계부터 조력 의존을 전제로 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연장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막상 연습실이나 리허설 동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작을 시작하기 전부터 늘 ‘이게 보조가 가능한가’부터 고민하게 되요.” (참여자 1)

“접근성이 있다고 하는 공연장도 실제로는 혼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많잖아요. 리허설 단계에서부터 조력이 없으면 창작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참여자 8)

이러한 결과는 접근성이 여전히 관람자 중심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창작자의 작업 조건과 창작 과정에 대한 고려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신의(2023)가 지적하듯, 공연예술에서 접근성은 단순한 이동 가능성을 넘어 연습-리허설-제작 전 과정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창작의 전제 조건이다. 본 연구의 FGI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장애무용 현장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하며,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구조 속에서 창작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초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이 지적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둘째, 공공문화시설의 접근성 기준은 관람자 중심에서 창작자 중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FGI 참여자들은 공연장 접근성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객의 이동과 관람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무대 위에서 연습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창작자의 접근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관객으로서 공연장에 들어오는 동선이나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무대 위에서 연습하고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는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이에요.”(참여자 19)

이는 접근성을 시설 기준 충족이나 사후적 보조 장치로 환원해 온 기존 정책 관점의 한계를 드러낸다. 박신의(2023)는 이러한 접근이 장애예술인을 여전히 지원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위치 짓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비판하며, 접근성을 창작의 전제 조건이자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원리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FGI에서 제기된 창작자 중심 접근성 요구는 이러한 정책 비판을 현장 경험 차원에서 구체화한다. 해외 연구 역시

접근성을 창작 기획 단계부터 통합할 때 장애예술인의 자율성과 협업 가능성이 확장됨을 보여주며(Whitfield & Fels, 2013; Hadley et al., 2022), 접근성을 기술적 매뉴얼이 아닌 창작 전 과정을 관통하는 설계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접근성 표준의 재정립과 함께, 기획자, 제작자, 교육자,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무용가의 장기적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레지던시 기반의 창작-생활 통합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FGI 결과, 주거-이동-연습 공간이 분리된 구조와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 방식이 창작 조건을 반복적으로 초기화하며, 장애무용가에게 지속적인 이동 부담과 생활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단기 사업은 계속 반복되는 데, 막상 사업이 끝나면 모든 조건이 다시 초기화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장애무용인은 이동이랑 숙소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창작이나 활동을 지속하기가 정말 어려워요.”(참여자 1)

“지원 사업이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로 끝나고, 그 이후를 고려한 구조는 거의 없잖아요. 이동과 숙소가 함께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무용가는 장기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참여자 8)

이러한 진술은 장애무용가의 창작환경이 단순한 참여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삶의 조건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단기사업 중심 지원 구조가 장애예술인의 전문성과 연속적 창작을 제약한다는 선행연구(안채린, 2020; 채민, 2023)와도 일치한다. 박신의(2023) 역시 작업공간, 시간의 연속성, 이동과 생활 조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 장애예술의 창작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의 FGI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문제의식을 장애무용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재확인하며, 레지던시 제도가 단기 체험형 지원을 넘어 창작-생활-이동 조건이 결합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2) 접근성 설계 원칙화와 통합적 교육 체계 구축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접근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사후적 보완 요소가 아닌 창작 설계의 원칙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적 교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FGI 참여자들은 접근성이 여전히 기획의 출발점이 아니라 작품 완성 이후에 덧붙여지는 부가 요소로 취급되고 있으며, 사업별·기관별로 공통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접근성이 기획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작품이 거의 완성된 뒤에 덧붙여지는 요소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 1)

“지원사업마다 접근성 기준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곳은 자막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어떤 곳은 아예 접근성 기준 자체가 없기도 하잖아요.”(참여자 19)

“기획자들도 접근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결국 접근성이 제도나 기준이 아니라 예술가 개인의 감각이나 의지에 맡겨지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5)

이러한 진술은 접근성이 제도적 기준이나 공적 책임이 아니라, 예술가 개인의 윤리나 감각에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접근성은 창작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가능할 경우 고려되는 주변적 요소로 위치해 왔으며, 이는 접근성을 물리적 편의나 기술적 장치로 축소해 온 기존 정책 관점의 한계를 드러낸다. 해외 사례는 접근성을 창작

설계의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영국 Clay & Paper Theatre는 창작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을 공동 설계할 때 포용적 창작 구조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Whitfield & Fels, 2013), 캐나다 Newworld Theatre의 <King Arthur's Night>는 접근성을 미학적 구성 원리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Johnson, 2018). 이는 접근성이 결과를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라, 창작 방법과 미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장애예술 논의에서는 방법론적 접근성(methodological accessibility)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물리적·제도적 접근성을 넘어, 장애문화의 관계 방식과 감각, 협업 구조가 훈련, 리허설, 제작 전반에 체화될 때 안전한 창작 환경이 형성된다는 관점이다(Hadley et al., 2022). 선행연구 역시 장애예술가의 경험과 관점이 창작 과정의 중심에 위치할 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됨을 입증한다(Schmidt et al., 2018). 이러한 논의는 국내 정책연구와도 맞닿아 있다. 채민(2023)은 접근성을 개인의 감각에 맡기는 방식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접근성 설계와 창작환경을 조율할 전문인력과 제도적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단기 결과가 아닌 반복적 참여와 장기적 과정 속에서 축적됨을 분석하며, 창작 과정 자체를 예술적 성과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장애무용에서 반복, 탐색, 협업의 과정이 예술적 성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논의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접근성은 사후적 보완이 아닌 창작 설계의 원칙이자 정책적 책임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접근성 표준 정비와 함께 기획자, 교육자, 제작자, 정책담당자를 포괄하는 통합적 교육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현행 장애무용 지원체계는 최종 성과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탐색·반복·실패·협업으로 구성되는 창작 과정 자체를 예술적 성과로 인정하는 평가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FGI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적 특성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장애무용에서는 창작 과정 자체가 이미 작품의 일부인데, 제도는 여전히 최종 결과물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참여자 1)

“연습하고 반복하는 그 시간 자체가 창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지원이나 평가 기준에 반영되지 않죠. 결국 비장애예술과 동일한 결과만 요구하면서, 창작 조건과 환경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장애무용의 고유한 창작 방식과 미학적 특성까지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14)

이러한 진술은 장애무용 창작이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신체감각의 조율, 반복과 실패, 관계적 협업이 누적되는 시간적 과정에 본질을 두고 있음에도, 제도가 이를 정량적 성과 지표로 환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무용의 시간성, 신체적 다양성, 관계적 창작 구조가 결과 중심 평가 논리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내 정책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조현성 등(2024)은 조력자, 접근성 담당자, 기획·행정 인력을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으로 개념화하며, 이들이 창작 과정 전반을 성립시키는 핵심 주체임에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FGI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조력자의 노동과 전문성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접근성이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창작 과정은 공식적인 평가와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결과물만이 성과로 인정되면서 장애무용의 고유한 창작 논리와 미학적 가치는 제도적으로 삭제된다. 선행연구 역시 장애예술의 미학은 완성된 산출물보다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감각적·관계적 의미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Sandahl, 2005; Koppers, 2013). Hadley(2018)는 장애무용수의 신체 경험이 협업 관계 속에서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여는 핵심 요소임을 지적하며, 과정에 대한 질적 이해 없이는 장애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드라마 극장 실천 또한 다양한 신체성을 포용할 때 기존 미학의 배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이 생성됨을 보여준다(Schmidt et al., 2018). 따라서 장애무용 정책은 결과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창작 과정의 시간성, 반복성, 협업 구조를 예술적 성과로 인정하는 평가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장애무용을 일회적 참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전문 예술 실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3) 창작 경험 확대 및 협업 지원

장애무용인의 창작 경험 확대와 협업 지원은 단순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주류 예술 영역과의 실질적 접촉, 신진 창작자의 진입 경로 확보, 창작 주체성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포함한다. Hadley 등(2022)은 장애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창작 과정 자체에 장애문화를 내재화하는 방법론적 접근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는 장애무용의 협업이 단발적 교류가 아니라, 창작 방식과 권력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주류 예술과의 실질적 협업 구조 구축이 요구된다. FGI 참여자들은 장애무용이 여전히 장애예술 내부의 순환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동시대 예술 담론이나 타 장르와의 협업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애무용은 늘 장애예술 안에서만 순환하는 구조에 놓여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장르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참여자 1)

“협업을 한다고 해도 실제 창작과정에서 함께 만드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결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도가 먼저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느낌도 들고요.”(참여자 3)

“기술 스태프나 영상, 미디어 아티스트, 음악감독 같은 다른 분야와 본격적으로 협업할 구조가 거의 없어요. 장애무용은 여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참여자 4)

이러한 진술은 현재의 협업 구조가 여전히 복지 중심의 보호적 틀에 머물러 있으며, 장르 간 융합이나 기술 기반 창작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협업이 ‘교류 프로그램’이나 ‘포용적 참여’ 수준에 머물 경우, 장애무용은 동시대 예술 생산 체계와 분리된 채 주변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협업 정책은 결과 중심의 결합을 넘어, 창작 방식·제작 시스템·기술 환경을 공유하는 공동 창작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진 창작자의 진입 경로 개방과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FGI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장애무용 지원 구조는 소수 기관과 기존 단체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신진 창작자나 비전공 기반 창작자의 진입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늘 같은 사람과 단체만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장애무용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 정보나 경로를 찾기 자체가 어렵죠.”(참여자 6)

“게다가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장애무용에 서는 이런 기준이 더 엄격하게 작동해요. 결국 소수의 팀만 고정되고 새로운 주체는 들어오기 어렵다 보니, 생태계 전체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8)

이는 장애 청년 예술가의 경력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진입 기회 부족과 정보 접근성 제한

(Boeltzig et al., 2009)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Salonlahti(2021) 역시 장애예술가의 경력 형성이 제도적 인정 부족과 기관 중심의 게이트키퍼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약된다고 분석한다. 지원 정책이 상층부 성과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신진 창작자와 지역 기반 실천가의 진입은 차단되고, 장애무용 생태계는 고령화·폐쇄화될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무용 정책은 진입 단계-성장 단계-확장 단계를 연속적으로 고려하는 다층적 지원 구조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협업 과정에서 창작 주체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권력 비대칭이 해소되어야 한다. FGI 참여자들은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장애무용인이 기획자, 연출자, 기관의 결정에 종속되며, 창작의 주체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형식적으로는 협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 권한은 대부분 비장애 예술가나 운영 주체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 9)

“시간표와 작업 방식, 결과물의 방향까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장애무용인은 그 틀에 맞추는 역할로 참여하게 되죠.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업이 설정한 방향과 성과 기준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참여자 11)

Collins 등(2021)은 예술 조직 내에서 장애인이 낮은 권력 위치에 놓이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주요 사회적 장벽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권력 비대칭은 협업을 명목으로 유지되면서도 장애무용인을 하위 실행자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 프레임워크는 상호의존성과 집단적 접근성을 핵심 원리로 제시하며(Gold, 2021),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창작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Gold & Bulmer, 2022). 따라서 장애무용 협업 정책은 장애무용인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기획, 창작, 의사결정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력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협업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창작 주체성의 질적 보장을 통해 장애무용의 예술적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4) 창작물 유통 및 플랫폼 구축

장애무용인의 창작이 일회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작 이후 단계인 유통, 기록, 재상영을 포괄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무용 작품은 공연 이후 기록과 배급, 재유통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창작 성과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Pirrone et al., 2023). 본 연구의 FGI 결과 역시 이러한 유통 단계의 구조적 공백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첫째, 장애무용 작품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전용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FGI 참여자들은 장애무용 공연이 단발성 발표에 그치며, 이후 기록·재상영·공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식적 경로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예술공연은 한 차례 발표된 이후 기록되거나 재상영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유통 구조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참여자 2)

“작품의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유통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의미 있는 작품이 제작되더라도 지역을 넘어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장애예술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참여자 3)

이러한 발화는 장애무용 작품이 창작 이후의 흐름(배급, 홍보, 재상영)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작품의 완성도 문제가 아니라, 작품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 영상화, 아카이빙, 재상영,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용 플랫폼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창작 성과를 추적, 확산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상영·유통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공연, OTT, 예술 전문 플랫폼 등 디지털 예술 소비 환경이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장애무용이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흐름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요즘은 공연을 극장에서 보기보다 온라인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장애무용작품은 온라인 환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상화 작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공연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작품이 발표 이후 빠르게 사라지는 구조죠.”(참여자 5)

“장애무용도 OTT나 예술 전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아카이브가 구축되지 않다 보니 연구자는 자료 접근이 어렵고, 관객 역시 작품을 만날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참여자 7)

이는 장애무용 유통의 문제가 단순한 채널 부재가 아니라, 기록-편집-저작권-유통권 확보-플랫폼 연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기반 상영 시스템은 작품 확산뿐 아니라 연구 자료 추적, 관객 접근성 확대, 장애무용인의 2차 수익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유통망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민간기업 협력 모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FGI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장애무용 작품의 유통은 보조금 기반 단기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연 이후 재공연이나 구매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수요 구조는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작품을 구매하거나 정기적으로 초청하는 사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부 사례만 반복될 뿐, 안정적인 수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참여자 8)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작품의 유통이나 재공연도 함께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제작 이후를 고려한 장기 유통 구조가 없고, 민간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장애예술작품이 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참여자 10)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형성이 장애무용 유통 구조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작품을 먼저 구매하고 정기적으로 초청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공공 수요가 먼저 형성되어야 민간 영역에서도 장애예술을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이후 유통이나 투자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11)

이는 장애무용 유통이 여전히 보조금 중심의 일회적 순환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우선구

매제, 공공극장의 상설 초청 시스템, 민간기업의 문화기금 연계 등 제도화된 협력 모델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장 접근성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무용 유통 정책은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 참여를 확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무용이 지속 가능한 예술 시장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장애무용가의 예술활동이 일회성 창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채린(2020)은 국내 장애예술 정책이 창작 기회와 발표 지원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장애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직업 정체성 형성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의 FGI 결과 또한 장애무용 정책이 창작 '경험' 제공을 넘어, 고용-소득-직업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1) 예술강사 및 창작활동 연계 지원

첫째, 장애무용 예술강사 양성과 재교육 지원은 장애무용가가 자신의 신체 경험과 예술적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립 경로로 기능한다. 김정희 등(2018)은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의 사회적 역할 확장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예술가 역할이 관계 형성자이자 매개자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무용예술강사는 단순한 강의 인력이 아니라, 장애 경험과 예술적 감각을 교육적으로 매개하는 전문인력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FGI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무용강사는 여전히 단기적·비정규적 구조에 머물며 전문성의 축적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멘토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 신뢰가 쌓이기 어려웠고, 결국 끝까지 함께한 멘토는 한 명뿐이었습니다.”(참여자 6)

“멘토로 참여한 분들은 모두 예술 전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팀 운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가의 전문성과 역할보다 자격증 여부가 우선되는 구조 자체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7)

이러한 진술은 박신의(2023)가 지적한 장애예술 전문성의 제도적 불인정 문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장애무용 예술강사 양성은 일회성 파견 중심 구조를 넘어, 재교육·보수교육·경력 관리가 연동되는 장기적 전문직 양성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무용가의 창작활동은 예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활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자립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FGI에서는 장애무용가의 창작과 연습, 공연 준비 과정이 여전히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연습과정도 분명한 노동이고 공연 역시 노동인데, 현재 제도에서는 이런 시간이 거의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1)

“공연이 한 차례 끝나면 소득도 함께 종료되고, 그 이전에 투입된 장기간의 연습과 준비 시간은 보상 체계

에서 완전히 제외되죠.”(참여자 8)

“프로젝트 제안은 계속 들어오지만 정기적인 급여나 월급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결국 생계는 예술 활동이 아닌 다른 영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참여자 3)

이는 조현성 등(202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프로젝트 단위로 소비되며 준비 과정과 반복 노동이 제도적 보상 체계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와 직결된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장애무용가의 창작활동이 실질적으로 노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비노동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창작 프로젝트와 일자리 정책의 연계, 예술활동의 공식적 근로 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장애무용가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보호 중심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권리 중심의 예술 일자리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FGI 참여자들은 장애무용인이 공연자 역할에만 한정되고, 기획, 운영, 행정, 기술 등 다양한 예술 직무로의 확장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일자리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장애예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해서, 예술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14)

“그래서 장애예술인은 공연만 하는 존재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기획이나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역할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거의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라고 봅니다.”(참여자 11)

이는 안채린(2020)이 제기한 장애예술의 복지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장애예술이 보호의 대상으로만 설정될 경우, 예술 노동으로서의 권리와 직업적 지위는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한 상시 고용 구조, 예술 행정 및 기획 직무로의 진입 경로 마련은 장애무용가를 예술 현장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노동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적 토대가 된다. 종합하면, 예술강사 양성, 창작-근로 연계, 권리 중심 일자리 도입은 분절된 정책이 아니라, 장애무용인을 ‘예술 참여자’가 아닌 ‘예술 노동자이자 고용 주체’로 전환시키는 통합적 자립 모델로 기능해야 한다. 이는 박신의(2023)가 강조한 장애예술의 예술적·정치적 전환 요구와, 조현성 등(2024)이 제시한 정책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실천적으로 연결한다. 결국 장애무용인의 자립은 단순한 소득 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 노동의 인정과 직업적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전환의 문제임을 본 연구는 분명히 보여준다.

2) 일자리 파견 및 조력자 지원 시스템

첫째, 장애무용가를 복지관, 생활시설, 공공문화기관 등에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자리 파견 모델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채린(2020)은 중앙 단위 공모·지원사업 중심의 장애예술 정책이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 기반 파견형 일자리는 장애무용가가 일회적 참여자가 아닌 지역 문화생산의 상시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지닌다. FGI에서도 파견형 일자리가 단기 체험을 넘어 장기 고용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복지관을 일회적으로 드나드는 형태의 참여로는 일자리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상주하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안정적인 고용이라고 할 수 있죠.”(참여자 1)

“특히 공공기관이 장애무용가를 강사로 채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예술교육자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역할과 위상이 분명히 달라집니다.”(참여자 3)

“지역 기반이 더해지면 효과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때, 장애무용가도 생활과 창작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참여자 4)

이는 김정희 등(2018)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지속적 관계 형성과 역할 안정성이 교육 효과와 전문성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결과와 상응한다. 즉, 장애무용가가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직업적 위상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 기반 파견 모델은 생활과 창작을 분리하지 않고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 자립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확장 가능성이 크다.

둘째, 장애무용인의 예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 지원 시스템은 자립 기반 논의의 핵심 요소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박신의(2023)는 장애예술의 생산 과정에서 관계망과 협력 구조가 핵심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도적으로 비가시화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의 FGI 결과 역시 조력자가 단순한 생활 보조를 넘어 연습-창작-공연 전 과정에 관여하는 공동 수행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연습 단계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움직이며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조력자인데, 제도에서는 여전히 이를 단순한 ‘보조 인력’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참여자 6)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과 같은 조력자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창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럼에도 조력자는 무대 뒤에서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과 기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참여자 4)

이러한 발화는 조력자의 역할이 이미 비공식적인 예술 노동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조현성 등(2024) 역시 조력자 지원, 일자리, 창작 공간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 요소의 통합적 설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조력자의 역할을 창작 보조, 이동·의사소통 매개, 연습·공연 현장 지원 등으로 구조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과 근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장애무용인의 창작 지속성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FGI에서 제기된 다음의 진술들은 장애무용인의 자립 문제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의 문제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장애예술인의 자립이 흔히 개인의 의지나 역량 문제로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참여자 8)

“예술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참여자 3)

“조력자 지원, 일자리, 창작 공간이 각각 분리된 채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작동할 때 비로소 장애예술인의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참여자 11)

이는 안채린(2020)이 지적한 장애예술 정책의 단절성과, 박신의(2023)가 강조한 장애예술의 관계적·구조적 생산 조건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결국 일자리 파견과 조력자 지원 시스템은 단순한 고용 확대나 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어, 장애무용인의 예술적 자율성, 노동권리, 경제적 독립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장애무용인 일자리 및 자립 기반 조성은 예술강사 양성, 공공기관 기반 일자리 파견, 조력자 지원이 상호 연동된 통합적 고용·지원 체계로 작동할 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는 장애무용가를 ‘지원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문화생산의 주체이자 예술 노동자’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하며,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기여, 경제적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장애무용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창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접근성 전반을 구조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박신의(2023)는 장애예술을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신체, 환경,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조건의 문제로 설명하며, 접근성 역시 개별 요소가 아닌 예술 생산 환경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FGI 결과 또한 장애무용의 창작과 공연이 공간, 이동, 정보, 관계, 시간 등 복합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며, 접근성 정책이 단편적 개선을 넘어 환경 전반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 물리적 접근성 개선 및 공간 활용

첫째, 기존 공연장과 문화예술공간의 물리적 접근성은 장애무용인의 실제 창작·공연 전 과정을 기준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안채린(2020)은 국내 장애예술정책이 접근성을 주로 ‘시설 기준 충족’의 문제로 다뤄 왔으며, 이로 인해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FGI 참여자들이 지적한 무대 진입 동선, 대기·준비 공간, 안전한 이동 경로의 문제는 접근성이 단순한 출입 가능성을 넘어 예술 활동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조건임을 보여준다.

“극장이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를 보면, 여전히 휠체어 이동이나 물리적 접근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리적 이동 외에도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참여자 19)

“최근에는 접근성 논의에서 시각·청각·지체장애까지는 비교적 기본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가적인 단계에서 뒤늦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접근성의 범위가 여전히 위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참여자 11)

이는 김정희 등(2018)이 강조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참여 환경의 질’ 개념과도 연결된다. 즉, 물리적 접근성은 단발적 이용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무용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건이며, 이는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또한 FGI 결과는 자막, 수어, 음성해설 등 내용적 접근성이 특정 회차의 ‘특별 공연’에 한정되지 않고 상시 운영 체계로 정착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연 접근성을 특정 회차에만 적용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 대피 안내 방송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접근성 공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공연에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상 대피 안내와 같은 필수 안내를 수어와 자막 영상으로 제작해, 모든 공연에서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죠. 접근성을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공연 운영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참여자 19)

이는 접근성을 배려나 서비스 차원이 아닌 공연 운영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하며, 공연장의 운영 철학 전환을 요구한다.

둘째, 기존 공연장과 창작공간의 운영 방식은 단기 대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애무용인의 창작 흐름을 감당할 수 있는 레지던시형-장기 작업공간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조현성 등(2024)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속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공간의 단절성’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작업 공간의 부재가 예술 활동의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한다. FGI 참여자들의 진술 역시 1년 단위 제공 방식이 창작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레지던시는 본래 해외 예술가가 일정 기간 체류하며 창작 활동을 진행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 예술가를 대상으로 ‘1년 무상 제공’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레지던시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참여자 12)

“특히 작업실은 단기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예술가가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창작 기반 공간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만 제공하는 구조는 예술 활동의 연속성과 축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여자 9)

이는 레지던시의 형식적 운영보다 장기 작업실(임대, 상주, 지속 이용) 중심 정책이 장애무용 창작의 현실에 더 부합함을 시사한다.

셋째, 장애무용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문화센터, 복지관, 공공체육관 등 기존 공공시설을 공연-연습 공간으로 전환, 활용하는 전략은 접근성 확대의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채린(2020)은 공간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공공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 정책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자원이라고 하면 흔히 예산이나 보조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술 활동의 맥락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공공자원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창작이 요구되는 예술 분야에서는 일회성 재정 지원보다도, 예술가가 중단 없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의 안정성이 훨씬 더 근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조건을 넘어 창작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원입니다.”(참여자 12)

연습실 공연이나 스튜디오 쇼잉과 같은 단계적 발표 구조는 공연의 기준을 장소나 규모가 아닌 창작 과정과 만남의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박신의(2023)가 강조한 장애예술의 수행적·과정 중심적 성격과 맞닿아 있다.

“공연은 반드시 완성된 형태로 극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작의 초기 단계에서는 연습실이나 소규모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발표 역시 공연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오히려 이러한 소규모 발표는 창작 과정의 일부로서 의미를 가지며, 작품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의 기준을 장소나 규모가 아니라, 창작 행위와 만남의 방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참여자 4)

나아가 공공시설 활용 시에는 장애무용인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관, 우선 배정 등 운영 규칙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문예회관의 연습실도 단기 대관만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게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이 비교적 명확하고,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 대관을 조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연습실을 일회성 사용 공간이 아니라 중장기 창작을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로 인식한다면, 기관 역시 보다 유연한 운영 방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술가의 창작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17)

넷째, 지역 기반 소규모 공간을 활용한 장애무용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은 접근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등(2018)은 문화예술교육이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질 때 참여 지속성과 관계 형성이 강화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FGI 결과 역시 중앙 거점 공간과 지역 소규모 공간이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역 기반 예술 환경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대규모 시설부터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도보 이동이나 짧은 거리 이동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소규모 예술 공간이 지역 곳곳에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참여자 8)

“예술 활동은 특정 시기나 프로젝트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찾아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형태는 개인 작업실일 수도 있고 자조 모임이나 소규모 연습이 가능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참여자 11)

“중앙 거점 공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점에 모든 기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그와 연계된 소규모 분소나 개인이 임차한 공간 등 지역 단위의 다양한 공간이 함께 구축되는 구조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2)

해외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호주 퍼포밍아츠 연구(Collins et al., 2021)는 장애인의 공연예술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접근성, 참여, 표현, 역량강화의 다차원적 장벽으로 분석하였고, Ma(2022)는 공연장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와 함께 제한적 참여 구조와 차별적 서비스 제공이 중층적으로 작동함을 밝혔다. Watkin & DeGrow(2022) 또한 극장 공간이 평등성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보편적·가치 기반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는 물리적 이동을 넘어 구조적·운영적 접근성 개선이 장애무용인의 예술활동 기반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장애무용인의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는 시설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운영 방식, 창작 시간의 연속성, 정보 제공, 관계 형성 환경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는 장애무용인을 ‘접근을 허용받는 존재’가 아닌 예술 환경을 함께 구성하는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접근성을 장애무용인의 문화적 권리와 예술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으로 재정의하며, 향후 장애예술 정책이 환경 전반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2) 접근성 강화된 공연 유치 및 상시 운영

첫째, 접근성이 보장된 공연장과 창작공간에서 장애무용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무용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공개 리허설 등을 병행함으로써 장애무용을 매개로 장애무용인과 비장애 관객이 함께 예술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장을 형성할 수 있다. FGI에서는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에서의 정기적 공연 운영이 장애무용의 사회적 가시성을 높이는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접근성이 확보된 극장에서 장애무용 공연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관객의 인식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장애무용을 일회성 행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참여자 19)

“단 한 번 열리는 공연은 쉽게 행사로 소진되지만, 공연이 반복되고 시간이 쌓일수록 그것은 하나의 예술 활동이자 지속적인 작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기성은 예술로서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8)

이러한 진술은 박신의(2023)가 제시한 장애예술의 ‘지속적 가시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박신의는 장애예술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반복적 노출과 축적을 통해 예술 생태계 안에서 인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접근성이 강화된 공연의 정기적 유치는 장애무용을 일회적·특별한 행사에서 벗어나 독립된 예술 장르로 인식하게 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공연과 연계된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공개 리허설 등의 병행 운영은 장애무용을 관람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관객의 신체적·감각적 경험으로 확장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김정희 등(2018)이 지적하듯, 문화예술교육에서 직접적 체험과 반복적 참여는 인식 변화와 거리감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장애무용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의 결합이 부가적 요소가 아닌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여기에 공연과 연계된 워크숍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관객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심리적 거리감이 낮아지고, 장애무용에 보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참여자 16)

이는 장애무용이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예술 실천임을 분명히 하며, 접근성이 강화된 공연장이 장애무용인과 비장애 관객 간의 감각적 교류를 매개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장애무용인의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 체계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술활동이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상시 운영은 창작 주기의 안정성을 높이고, 연습-공연-교육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조현성 등(2024)이 지적한 ‘기다림 중심의 구조’, 즉 불규칙한 공연 기회와 단절된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예술인의 활동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FGI 참여자들의 진술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현장 차원에서 확인시켜 준다.

“공연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열리는 구조에서는 그 사이의 시간이 창작을 이어가는 기간이라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의 흐름이 단절될 수밖에 없죠.”(참여자 2)

“그래서 상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큼니다. 작품을 한 번 발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하고 확장하면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공연이나 활동이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갖춰져야 무용가 역시 수입과 생활을 예측하며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참여자 6)

이는 접근성 강화된 공연의 상시 운영이 예술적 지속성뿐 아니라, 장애무용인의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생활 안정성에도 직결되는 조건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장애유형별 특성과 참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포괄적 접근성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박신의(2023)가 지적하듯 접근성이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선택적 배려에 머물 경우, 접근성 내부에 새로운 위계가 형성될 위험이 있으며, 본 연구의 FGI 역시 다양한 감각과 인지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무용인의 참여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관객에게 접근성을 학습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해외 선행연구 또한 접근성 강화와 상시 운영의 결합이 장애예술의 사회적·경제적 포용을 촉진하는 핵심 조건임을 보여준다(Le Roux, 2018; Collins et al., 2023). 이러한 사례들은 장애무용 공연의 상시 운영이 단순한 프로그램 전략을 넘어, 장애무용을 예술 생태계 안에 정착시키고 관객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구조적 조건임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접근성 강화된 공연의 정기적 유치와 상시 운영은 장애무용을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반복·축적되는 예술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조건이며, 장애무용인을 ‘참여의 대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무대에 서는 예술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3) 통합형 공간 운영 및 협업 촉진

첫째, 장애무용인과 비장애무용인이 함께 연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통합형 거점공간 조성은 장애무용을 분리된 장르로 고립시키지 않고 예술적 상호작용 속에서 확장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박신의(2023)는 장애예술이 보호 중심의 독립 영역에 머무를 경우 예술적 실험과 교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비장애 예술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미학적 의미가 생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형 공간은 단순한 공동 사용 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체 조건과 움직임 경험이 교차하며 협력적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FGI 참여자들이 지적한 분리된 공간 구조의 한계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현장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현장에서는 장애무용과 비장애무용이 아예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함께 작업해 볼 기회 자체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이 협업의 가능성도 함께 차단하고 있는 셈이죠.”(참여자 2)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연습해 봐야 서로의 움직임 방식이나 리듬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협업은 회의나 언어적 논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몸을 쓰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6)

이러한 발화는 통합형 공간이 단순한 공존의 장소를 넘어, 실질적인 협업이 발생하는 조건임을 보여준다. 김정희 등(2018)이 지적하듯 문화예술교육에서 상호작용과 공동 경험은 창의적 사고와 표현 확장의 핵심 요인이며, 이는 장애무용과 비장애무용의 협업 역시 언어적 합의보다 신체적 상호작용과 공동 작업의 축적을 통해 형성됨을 시사한다. 통합형 공간에서의 반복적 만남은 장애무용인의 무대 경험을 확장하고 예술적 정체성을 심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통합형 공간 운영에서는 안전성과 접근성이 기본 전제 조건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안채린(2020)이 지적하듯 공간 확보 이후의 안전·접근성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약화되며, FGI 결과 역시 무장애 동선,

안전한 바닥재, 접근 가능한 휴게 공간이 장애무용인의 심리적 안정과 창작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임을 보여준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동선이나 바닥 상태, 장비 배치 등에서 위험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참여자 1)

“연습하는 동안 계속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신경을 써야 한다면, 움직임이나 표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공간은 결과적으로 창작의 질과 몰입도를 동시에 저해하게 됩니다.”(참여자 5)

이는 공간 접근성이 곧 창작의 자유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공간 운영 인력에 대한 접근성, 안전 관련 교육의 중요성은 통합형 공간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조현성 등(2024)은 장애예술 환경에서 물리적 설비 못지않게 운영 인력의 인식과 대응 방식이 예술가의 경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며, 접근성은 ‘시설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람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FGI 참여자들의 진술은 이러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시설 자체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운영 인력이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불편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도적 기준과 현장 경험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지점이죠.”(참여자 3)

“결국 안전이나 접근성은 시설 설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공간이라도 전혀 다른 환경이 됩니다.”(참여자 4)

이는 통합형 공간이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애 문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갖춘 인적 환경과 결합될 때 비로소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성 중심의 운영 전략은 장애무용인이 창작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제약받지 않고,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장애무용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비장애무용인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포용적 예술 실천을 분석한 Fox와 Macpherson(2015), 장기적 멘토링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Band 등(2011)의 연구와도 맞닿아 있으며, 통합형 공간의 성공 조건이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관계적 안전성과 조직 문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통합형 공간 운영은 창작 환경 개선을 넘어 장애무용과 비장애무용이 예술적 동료로 만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전략이다. 이는 협업을 통해 새로운 미학적 실천을 생성하고, 장애무용을 예술 생태계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로 이동시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4.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기반 조성

장애무용인의 예술활동이 일회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장애예술인을 동등한 예술 주체로 인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확보하며, 현장을 이해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책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만 교육-창작-공연-고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체계가 작동할 수 있으며, 장애예술 역시 문화예술 생태계의 주변이 아닌 하나의 축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정비

첫째, 장애인이 무용을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창작을 통해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무용교육을 출발점으로 창작활동과 프로젝트 참여로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교육 단계에서 발굴된 장애무용가가 일회성 경험에 머물지 않고 창작-발표-재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장애무용인의 활동 방식과 창작 조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별 필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FGI에서도 교육 이후 창작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재의 단절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이후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정이 끝나면 축적된 경험이 이어지지 못한 채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참여자 3)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무대에 서고 싶어도, 이를 연결해 줄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결국 중간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과 창작, 발표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셈이죠.”(참여자 6)

“더 큰 문제는 예술가마다 장애 유형과 개인적 상황이 서로 다른데도, 지원 방식은 늘 동일한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지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2)

이러한 발화는 장애무용 지원정책이 단일 사업 중심이 아니라, 교육-창작-발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공모사업 운영 시 특정 장애무용인이 복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유연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지원 구조는 한 예술인이 동시에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창작활동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무용 창작은 프로젝트별 성격과 요구 자원이 상이하므로, 필요에 따라 교육-창작-공연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FGI 참여자들은 복수 지원 제한이 오히려 예술활동의 지속을 어렵게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원 사업에서 하나의 항목만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에서는, 실제로 그 외에 함께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제도가 현장의 작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참여자 4)

“작품 하나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창작비뿐 아니라 공간, 조력자, 이동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런 지원을 함께 받지 못하도록 분절해 놓고 있어, 여러 지원을 연계해 진행하려 해도 규정에 막혀 작업이 중간중간 끊기고 오히려 비효율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참여자 5)

이러한 진술은 복수 지원 허용이 특혜가 아니라, 장애무용인의 창작 현실을 반영한 필수적 제도 개선임을 시사한다.

셋째, 장애무용인의 개별 장애 유형과 예술 분야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유형에 따라 창작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원의 내용과 방식은 상이하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시각장애무용인과 청각장애무용인, 발달장애무용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접근 방식이나 조력 구조는 서로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FGI에서는 획일적 지원 기준이 현장과 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

“현행 지원 제도를 보면 장애 유형은 서로 다른데, 지원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장애의 특성과 조건 차이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느껴집니다.”(참여자 2)

“개인마다 필요한 지원 조건이 분명히 다른데도, 이를 제도 안에서 설명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장의 다양성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참여자 6)

“제도적으로는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함은 장애 유형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형식적인 공평함이 오히려 실질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참여자 3)

이는 장애무용 정책이 형식적 형평성에 머무르지 않고, 개별 예술인의 조건과 필요를 존중하는 실질적 형평성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은 해외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Leahy와 Ferri(2024)는 유럽 28개국 분석을 통해 문화 부문의 장애 포용성 강화를 위해 자금 배분, 거버넌스, 협의의 구조 전반의 개혁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으며, Hadley(2024)는 정책, 예산, 교육-훈련과 더불어 장애예술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장애예술 발전에 중요한 조건임을 밝혔다. 또한 Lord와 Hutchison(2003)이 제시한 개별화된 지원과 자금 구조가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관점은, 한국의 장애무용 지원 역시 획일적 기준을 탈피해 교육-창작-발표-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정책 설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2) 예산 확보 및 전담 인력 배치

첫째, 장애무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지원센터 설립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무용 지원은 여러 기관과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어, 예술인이 자신의 활동 단계에 맞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교육, 연습공간 제공, 창작 지원, 작품 발표 및 유통을 포괄하는 장애무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장애무용 현장을 이해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행정 중심 지원을 넘어 창작 맥락과 작업 조건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FGI에서도 전담 인력 부재로 인해 지원 과정에서 반복적인 설명과 조율이 요구되는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어디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전 작업의 맥락이나 축적된 과정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상당한 피로감이 큼니다.”(참여자 2)

“그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담당자가 자주 교체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의 흐름이나 장애무용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행정 창구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지 않다 보니, 현장과 제도 사이의 단절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참여자 5)

이러한 발화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과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가 장애무용 지원의

핵심 조건임을 보여준다.

둘째, 예술인 파견사업을 통해 장애무용가를 학교,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파견하여 무용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이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속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파견사업이 단기 강의나 일회성 활동에 그칠 경우, 장애무용가의 직업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견 이후에도 창작활동과 교육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FGI에서는 파견사업이 ‘경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현장에서 파견을 나가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작업이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이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지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참여자 6)

“한 번 불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료하는 방식으로는 파견의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이후의 작업과 활동으로 계속 연결해 주는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비로소 파견의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4)

“교육 자체의 필요성도 물론 크지만, 예술가가 현장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속성은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파견은 교육을 넘어 관계와 구조를 남겨야 합니다.”(참여자 1)

이러한 진술은 예술인 파견사업이 단순한 인력 활용 방식이 아니라, 장애무용가의 장기적 성장과 전문성 축적을 지원하는 경로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파견-사후 관리-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 모델 구축이 요구된다.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의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Šubic과 Ferri(2023)의 유럽연합 국가 비교 연구에서는 국가 장애 전략이 문화정책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창작자 지원, 접근성 강화, 인식 제고, 장애 정체성 보호 등의 구체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Leahy와 Ferri(2024)의 연구에서 자금 부족과 적절한 서비스 공급 부족이 장애인의 문화 참여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점은, 한국의 장애무용지원센터 설립과 전담 인력 배치의 절실함을 국제적 근거로 제시한다.

3) 법령 정비 및 공간 확보

첫째, 비장애예술인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지원사업과 분리되어 운영되어 온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재검토하고, 장애예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지원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예술인 지원은 별도 사업군으로 구분되며 지원 범위와 규모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장애예술인 지원사업과의 통합 또는 연계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보다 폭넓은 창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장애예술인을 ‘특별 지원의 대상’이 아닌, 동시대 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등한 예술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하며, FGI에서도 장애예술인이 제도 안에서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이 늘 별도의 범주로 분리되어 묶여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예술가로 출발하지 않는 구조가 제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참여자 5)

“실제로는 같은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르고 선택지는 오히려 더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접근 가능한 사업은 제한적이고 이름만 통합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참여자 2)

이러한 발화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현재의 지원 체계가 형식적 형평성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며, 차별 없는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신도시 개발 및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기부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은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현재 다수의 장애예술인은 임시 공간이나 단기 대관 공간에 의존하고 있어 창작의 지속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전용 또는 우선 활용 창작공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FGI 참여자들은 공간의 ‘존재’보다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간이 잠깐 주어지는 방식으로는 창작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업은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창작이 가능해집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시설은 계속 확충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분명합니다... 만약 공공시설의 일부 공간이라도 작업실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장애예술인에게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훨씬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여자 4)

이러한 진술은 창작공간 확보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과제임을 보여준다. 해외 연구 역시 장애예술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창작공간 확보가 법령과 정책 개혁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Ferri와 Giannoumis(2014)는 유럽연합 문화정책 분석을 통해 문화시설과 콘텐츠 접근 의무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웹 접근성과 문화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Collins 등(2021)은 호주 공연예술 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이 접근, 참여, 대표성, 권능화의 네 차원에서 제약을 받으며,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장애무용인이 비장애 예술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공공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 창작공간을 보장받기 위해 법령 정비와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장애무용 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법-제도-재정-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5.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전문인력 교육 지원

장애무용인의 예술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인 지원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예술 현장은 교육, 기획, 창작, 유통이 상호 연결되어 작동하는 만큼, 각 단계에서 장애예술의 특성과 창작 맥락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장애무용인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예술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예술교육자 및 매개자 양성

첫째, 장애예술가와 비장애예술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예술교육자 양성이 필요하다. 장애 예술교육 현장에서는 예술적 역량뿐 아니라,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예술강사 양성 과정에서 장애 이해 교육과 예술적 전문성 강화를 병행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보다 안전하고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FGI에서는 예술교육자가 장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협업과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다수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보면 예술적 전문성은 충분한데도,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수업 과정 전반에서 계속 엇갈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함께 작업하기에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죠.”(참여자 2)

“실제로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 이전에 태도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서로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이 거리감으로 이어져 협업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참여자 5)

이러한 발화는 예술교육자가 기술 전달자를 넘어, 장애예술가와 비장애예술가가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적 매개자임을 보여준다. 김정희 등(2018)이 지적하듯, 교육자의 태도와 소통 방식은 참여 지속성과 경험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이는 장애 예술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장애 이해를 포함한 예술교육자 양성은 교육 내용보다 교육 환경 설계의 문제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무용가를 교육자로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장애무용가는 자신의 신체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공감 역량을 지니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수법과 매개 역량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FGI 참여자들 역시 장애무용가가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무용가가 교육 현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제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되길 요구받지만, 그에 앞선 교육자 양성 구조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참여자 4)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예술적 역량은 충분한데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는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애무용가는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매개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역량을 키워주거나 제도화하는 장치는 아직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참여자 6)

이는 장애무용가가 자신의 신체 경험과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교육적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주체임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박신의(2023)가 강조한 장애예술의 ‘지식 생산 주체로서의 장애예술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무용가 교육자 양성은 단순한 직무 확대가 아니라 장애예술의 인식 전환을 수반하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장애 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개자와 협업자를 단기 양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교육이나 프로젝트 중심 협업은 현장 경험의 축적과 교육의 연속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예술교육자 풀(pool)을 조성하고, 무용을 중심으로 음악, 연극, 미디어 등 타 장르와의 협

업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FGI에서도 반복적 협업과 장기적 관계 형성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교육은 같은 사람들과 일정 기간 계속 작업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관계가 쌓여야 학습이 축적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형성됩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구조에서는 신뢰를 쌓기 어렵고 교육 역시 표면적인 단계에 머물기 쉽습니다...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팀이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가능해지며 그때 비로소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5)

이는 예술교육자 및 매개자 양성이 단기 인력 공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무용을 중심으로 음악, 연극, 미디어 등 타 장르와의 장기적 협업이 가능해질 때, 장애 예술교육은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확장 가능한 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Derby(2016)는 장애학 페다고지를 교사 교육에 통합할 경우 장애 관련 교육 준비도가 향상됨을 보고하였고, Symeonidou(2020)는 장애예술 서사를 활용한 교육이 포용적 교육 설계 역량을 강화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Hadley 등(2022)은 장애예술 현장에서 문화적 안전이 협업의 핵심 조건이며, 이는 실제 장애예술가와의 협력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종합하면, 예술교육자 및 매개자 양성은 장애 이해와 예술 전문성, 관계 형성 경험이 결합된 장기적 육성 체계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예술인을 동등한 협력 주체로 위치 짓는 교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2) 감수성 교육 및 인식 개선

첫째,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육자 전반의 이해와 감수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무용가의 예술활동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 주변 보호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예술가의 예술적 시도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FGI 참여자들은 보호와 배려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통제가 오히려 예술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걱정과 보호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우려가 커질수록, 결과적으로는 예술 활동의 선택지 자체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참여자 3)

“예술을 시도해 보려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먼저 나오면, 활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경험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는 균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참여자 6)

이러한 발화는 감수성 교육이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장애예술인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포함한 예술적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조건임을 보여준다. 김정희 등(2018)이 지적하듯, 문화예술교육에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실험 가능성이 보장될 때 참여 경험의 질은 높아지며, 이는 장애무용 교육 역시 보호와 통제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도전과 선택을 존중하는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무용가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과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전담 인력은 단순한 행정 처리자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요구를 해석하고 창작 환경을 조율하는

핵심 주체이지만, FGI에서는 이들의 이해 부족으로 지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장애예술인의 실제 창작 맥락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통제 중심의 지원에서 자율성과 예술적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가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작업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기본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논의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죠.”(참여자 2)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방식과 계속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언어와 현장의 언어 사이에 간극이 크다고 느껴집니다.”(참여자 5)

이는 감수성 교육이 예술가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넘어,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조현성 등(2024)은 행정 인력의 장애 인식과 태도가 제도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의 경험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지적하며, 감수성을 제도 운영의 핵심 역량으로 위치 짓는다. 즉 전담 인력과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감수성 교육은 지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 장치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자율성과 예술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해외 연구와도 연결된다. Fortuna 등(2024)은 장애 인식 교육이 접근성 실천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고, Peterson과 Quarstein(2001)은 기관 종사자에게 지속적인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French(1992)는 시뮬레이션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한 교육 방식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종합하면, 감수성 교육은 개인 차원의 인식 개선을 넘어 조직과 제도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구조적 개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 전담 인력과 행정 담당자를 포괄하는 감수성 교육 체계가 구축될 때, 장애예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예술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무용의 지속 가능성과 권리 중심 정책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3) 전담인력 채용 및 지원 체계 구축

첫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무용의 특성과 창작 맥락을 이해하는 전담 인력의 채용과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안채린(2020)은 장애예술 정책에서 인적 지원 체계가 단기 사업 단위로 운영되면서, 예술인의 작업 맥락이 누적·관리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의 FGI 결과 역시 전담인력의 부재 또는 잦은 교체가 장애무용인의 창작 흐름과 지원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의 맥락과 그동안의 작업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의 흐름과 연속성이 계속해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참여자 5)

“행정 절차를 잘 아는 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는 장애무용의 특성과 작업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창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와 현장 사이의 불필요한 단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참여자 2)

이러한 발화는 전담인력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장애예술인의 창작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핵

심 주체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박신의(2023)는 장애예술의 생산이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관계적·제도적 지원 구조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전담인력을 창작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위치 짓는다. 즉 전담인력은 예술활동을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 구조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예술가를 지원하는 조력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창작의 동반자로 제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김정희 등(2018)이 지적하듯, 예술 실천 과정에서 매개자와 보조 인력의 관계적 역할은 창작의 질과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장애무용 현장에서 조력자가 생활 지원을 넘어 연습·이동·공연 준비 전반에 관여하는 실질적인 공동 수행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FGI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술들은 조력자의 존재가 장애무용 창작의 가능성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연습 단계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움직이며 작업을 조율하는 사람이 바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이 역할을 단순한 ‘보조 인력’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자의 개입이 창작의 핵심 과정이라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참여자 4)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이나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조력자가 없으면 창작 자체가 시작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력자는 무대 뒤에서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작업자이지만, 그 과정과 노동은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참여자 6)

이는 조현성 등(2024)이 지적한 조력자 지원, 일자리, 창작 환경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장애예술인의 지속성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조력자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장애무용인의 창작은 개인적 헌신이나 비공식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 예술 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조력자 지원체계는 이동·생활 지원을 넘어, 예술적 감각과 장애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보상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박신의(2023)가 강조한 장애예술의 관계적 생산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창작 자율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전담인력 체계의 중요성은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Gold와 Bulmer(2022)는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전담 스태프와 매개 인력을 예술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였으며, Yoon(2020)은 호주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원 인력이 환경 조성, 네트워킹, 경력 개발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의 장애예술인 강사·매개자 교육 과정이 전담인력 양성을 제도화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안채린(2020)이 지적한 정책 인프라 부족에 대한 실천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전담인력 채용과 조력자 지원체계 구축은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개인의 헌신에 맡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 이는 장애예술인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전문적 창작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적 전환이며, 장애무용이 안정적인 예술 실천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로 기능한다.

IV. 결론 및 제언

장애무용은 단순한 예술활동을 넘어, 장애인이 자신의 몸과 예술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실천이다. 이는 기존의 ‘포용적 접근’을 넘어 ‘모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 장애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누구나 평등하게 예술을 창

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무용인의 예술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무용인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장애 창작공간 조성,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및 창작지원사업 확대, 작품 유통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 '모두의 관점'에서 창작지원은 장애인을 특별한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장애무용인이 경제적 독립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예술가 대상 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장애무용인의 공연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파견사업 확대, 창작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연계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조력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무용인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조력자를 창작활동의 동료로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모두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공연장, 전시장 등 기존 문화공간의 물리적·내용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무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무장애 공연장 확충, 장애유형별 요구를 반영한 창작공간 조성, 장애무용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정기적 운영 등이 포함된다. '모두의 관점'에서 접근성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의 자산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무용이 독립된 예술 장르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무용 향유-교육-창작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공모사업 지원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며, 장애무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센터 설립 및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예술 지원사업을 비장애 예술인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장애예술인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무용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애와 예술을 아우르는 교육자와 매개자를 양성하고, 창작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애와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예술강사를 양성하고, 장애예술가의 강사 양성 및 매개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조력자를 창작활동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무용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발전 방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적·실천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무용 창작활동의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무용 전용 창작공간 및 공연장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무용 작품의 유통과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무용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무용인의 창작활동을 단순한 예술 행위가 아닌 경제적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무용인을 위한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예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장애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예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존 공연장과 전시공간을 무장애 환경으로 개선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공연 및 창작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무용과 비장애무용이 협업할 수 있는 통합형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예술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무용 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무용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무용 전담센터를 설립하고 예술인 파견사업을 확대하여 장애무용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력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와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예술강사 및 매개자를 양성하여 장애예술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애예술가의 조력자를 단순한 보조자가 아닌 창작활동

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력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무용인의 예술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결합될 때, 장애무용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적 목표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장애무용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장애예술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희, 유경민, 송기호, 김용현(2018).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 제안. *장애인복지연구*, 9(1), 1-24.
- 김현아(2024). 근거이론을 활용한 장애인 예술공연단체의 국공립 운영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탐색. *한국무용연구*, 42(4), 199-238.
- 박신의(2023).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참여 확대와 장애예술 담론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문화예술경영*, 6, 1-16.
- 안채린(2020). 혁신적 포용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시론(試論)적 논의-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0, 89-127.
-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홈페이지(2025.11.10.검색). <https://ac.ieum.or.kr/about/about.php>
- 이지설(2024).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장애무용예술교육 정책이슈 변화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7(4), 159-173.
- 정병은(2016). 장애아동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81-311.
- 정용문(2023). 호주의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고용 정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통권 제71호*, 7-11.
- 정중은, 최보연(2021).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방향 모색: 영국의 정책 및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2(2), 81-113.
- 조현성, 김홍규, 정병은, 최보연, 최선영(2024).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채민(2023).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의 국가별 연구: 포용적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장애학*, 8(2), 111-136.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서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Band, S. A., Lindsay, G., Neelands, J., & Freakley, V. (2011). Disabled students in the performing arts-are we setting them up to succeed?.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5(9), 891-908.
- Biglieri, S., McQuillan, R., MacDonald, D., & Ross, T. (2025). Understanding accessibility and disability in the planning profession: an examination of planners' knowledge and practices. *Town Planning Review*, 96(3), 275-300.
- Boeltzig, H., Sullivan Sulewski, J., & Hasnain, R. (2009). Career development among young disabled artists. *Disability & Society*, 24(6), 753-769.
- Bowen, G. A. (2009). Docum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9(2), 27-40.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ollins, A., Fillis, I., & Sanal, Z. G. (2023). Social inclusion of disabled performers in the performing arts: a case from Türkiye.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An International Journal*, 42(8), 968-985.
- Collins, A., Rentschler, R., Williams, K., & Azmat, F. (2021). Exploring barriers to social inclusion for disabled people: perspectives from the performing arts.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28(2), 308-328.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Derby, J. (2016). Confronting ableism: Disability studies pedagogy in preservice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57(2), 102-119.
- Ferri, D., & Giannoumis, G. A. (2014). A reevaluation of the cultural dimension of disability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The impact of digitization and web accessibility.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32(1), 33-51.
- Fortuna, J., Dean, J., Estelle, H., Ross, S., & Cantwell-Jurkovic, L. (2025). Staff training on disability awareness in museum settings: A scoping review. *Curator: The Museum Journal*, 68(4), 588-601.
- Fox, A., & Macpherson, H. (2015). *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A critical manifesto*. Routledge.
- French, S. (1992). Simulation exercises in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A critique.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7(3), 257-266.
- Gold, B. (2021). Neurodivergency and interdependent creation: Breaking into Canadian disability arts. *Studies in Social Justice*, 15(2), 209-229.
- Gold, B., & Bulmer, A. (2022). Creative Enabling: Relations and Structures of Support for Disabled Artists. *Canadian Theatre Review*, 190, 19-23.
- Hadley, B. (2018). Disability, disabled dance audiences and the dilemma of neuroaesthetic approaches to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 *Dance, disability and law: Invisible difference*, 293-315.
- Hadley, B. (2024). Generative, reductive or exploitative? How change in policy, funding and production practice impacts disciplinary and transdisciplinary practice in disability arts in Australia. *Journal of Arts & Communities*, 15(2), 249-264.
- Hadley, B., Paterson, E., & Little, M. (2022). Quick Trust and Slow Tim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and Social Justice*, 2(1), 74-94.
- Hadley, B., Rieger, J., Ellis, K., & Paterson, E. (2024). Cultural safety as a foundation for allyship in disability arts. *Disability & Society*, 39(1), 213-233.
- Johnston, K. (2017). From republicans to hacktivists: recent inclusion initiatives in Canadian theatre. *Research in Drama Education: The Journal of Applied Theatre and Performance*, 22(3), 352-362.
- Johnson, M. (2018). Integrating Accessibility and Aesthetics Onstage in Newworld Theatre's King Arthur's Night.
- Krueger, R. A. (201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age publications.
- Kuppers, P. (2013). *Disability and contemporary performance: Bodies on the edge*. Routledge.
- Le Roux, M. (2018). *There's a 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arts: Exploring how interaction with the performing arts may facilitate the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ape Town.
- Leahy, A., & Ferri, D. (2024). Cultural policies that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arts: Findings from a qualitative multi-national study. *Disabilities*, 4(3), 539-555.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Lincoln Naturalistic Inquiry 1985.
- Lord, J., & Hutchison, P. (2003). Individualised support and funding: building blocks for capacity building and inclusion. *Disability & Society*, 18(1), 71-86.
- Ma, G. Y. K. (2024). An ecological approach to self-reflections on the inaccessibility of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to wheelchair users. *Disability & society*, 39(5), 1276-1296.
- Morgan, D. L. (1996). Focus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1), 129-152.
- Morgan, 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Vol. 16). Sage.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A Sociological Approach*. Palgrave Macmillan. <https://doi.org/10.1007/978-1-349-20895-1>
- Peterson, P. A., & Quarstein, V. A. (2001).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for disability professional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3(1), 43-48.
- Pirrone, M., Centorrino, M., Galletta, A., Sicari, C., & Villari, M. (2023). Digital Humanities and disabilit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cultural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y. *Digital Scholarship in the*

- Humanities*, 38(1), 313-329.
- Sandahl, C. (2005). From the streets to the stage: disability and the performing arts. *PMLA*, 120(2), 620-625.
- Salonlahti, O. (2021). Twists and turns-The careers of Finnish disabled and Deaf artists. *Nordisk kulturpolitisk tidsskrift*, 24(1), 37-60.
- Schmidt, Y. (2018). Disability and postdramatic theater: Return of storytelling. *Journal of Literary & Cultural Disability Studies*, 12(2), 203-219.
- Schmidt, Y., Marinucci, S., Bocchini, S., Quadri, D., & Rey, A. (2018). DisAbility on Stage-Exploring the Physical in Dance and Performer Training. *Research in Arts and Education*, 2018(2), 74-87.
- Symeonidou, S. (2022). Teacher education for inclusion and anti-oppressive curriculum development: innovative approaches informed by disability arts and nar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6(7), 659-673.
- Šubic, N., & Ferri, D. (2023). National disability strategies as rights-based cultural policy t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9(4), 467-483.
- Thomas, G. (2025). Interweaving Accessibility into Theatre. *Journal of Consent-Based Performance*, 3(2), 16-27.
- Watkin, J., & DeGrow, D. (2022). Theatre is Not Built for Equity: Considering Intersectionality and Disability in Theatre Practice and Design. *Theatre Research in Canada*, 43(2), 287-297.
- Whitfield, M., & Fels, D. I. (2013). Inclusive design, audio description and diversity of theatre experiences. *The Design Journal*, 16(2), 219-238.
- Yoon, J. H. (2021).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in the arts management of supported studios in Australia.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51(1), 19-36.

ABSTRACT

Directions and Challenges in Disability Dance Policy[†]

Hyejeon Ho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disability dance and propos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To achieve thi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including disability dancers, disability arts planners, officials from disability arts support organizations, and researchers in disability policy and cultural arts policy. The findings revealed that disability dance is not merely an artistic activity but a crucial practice that allow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freely express their bodies and artistic identities while fostering an inclusive society. Furthermore, disability dance contributes to breaking down barrier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promoting an equitable artistic environment. To achieve this, the study suggests five key policy directions: (1) expanding support to facilitate disability dancers' creative activities, (2) establishing a sustainable foundation for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disability dancers, (3) enhancing accessibility to ensure that individuals of all disability types can participate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4) developing policy frameworks to establish disability dance as an independent artistic discipline, and (5) fostering professional personnel and implementing sensitivity education that integrates both disability and the arts. By presenting policy and practical direc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isability danc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where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can equally engage in artistic creation and appreciation. Through this approach, disability dance will not be perceived merely as a subject of support but will instead be recognized as an essential field that expands artistic value and social significance. Ultimately, this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cultural and artistic ecosystem.

Key words : disability dance, creative support, cultural and artistic accessibility, disability arts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논문투고일: 2025.11.30

논문심사일: 2026.01.05

심사완료일: 2026.01.27

[†] This paper is an expanded and revised version of a study previously presented at the 49th Fall Academic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 Professor, Department of Da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